

〈南北政治分科委員會〉

第4次會議會議錄

1992. 5.

統 一 院

6/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5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92. 5. 19(火) 10 : 00~12 : 07

나. 場 所 : 板門店 北側地域 「統一閣」

다. 雙方 代表團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委員長	李東馥(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백남준(남북고위급회담 대표)
委 員	閔炳錫(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 金達述(통일원 자문위원) 崔圭鶴(총리실 심의관) 姜根鐸(외무부 심의관) 辛光玉(법무부 심의관) 申 丁(합참 민심실장)	김완수(외교부 순회대사) 조상호(「조국전선」중앙위 서기국 부국장)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정영춘(조평통 서기국 참사) 심태진(정무원 상급 심의원) 조성대(조선중앙방송위 처장)
隨行員	윤정원, 이봉조, 문덕형 김명득, 송영건, 한수용	전재달, 류용석, 윤기욱 안명철, 김룡현, 최창수

會議錄

2. 會議錄

〈쌍방위원 입장 및 인사교환〉

남(이동복) : 안녕하셨어요?

북(백남준) : 안녕하세요?

남(이동복) : 최선생도 수고가 많습니다.

북(최성익) : 반갑습니다.

남(이동복) : 7차 회담후에 처음.

북(백남준) :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이동복) : 처음 하는 분과위원회예요.

북(백남준) : 열 하루만에 만났지.

남(이동복) : 열 하루만이에요.

북(백남준) : 정총리 선생, 또 여러분들 잘 지내요?

남(이동복) : 예, 아주 뭐 잘 지냅니다.

북(백남준) : 열 하루만에 만났습니다.

오늘 날씨도 괜찮지요?

남(이동복) : 예, 날씨도 좋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 남쪽은 북쪽에 제일 가까운 쪽부터 모내기
가 지금 시작이 될 텐데, 북에는 지금 모내기 거의 다 끝나가지 않습
니까?

북(백남준) : 예, 완성단계입니다.

남(이동복) : 거의 끝나가지요.

북(김완수) : 기계로 하니까 빠르지요.

북(백남준) : 어저께 내려 왔어요.

내려 왔는데, 내려 오면서 보니까 지금 모내기가 상당한 정도로.

보도들에 의하면 이달 말쯤 다 끝낸다 그러니까.

남(이동복) : 모내기라는 것이 저 북쪽 끝에서 부터 쪽 내려가니까.

북(백남준) : 예, 그래요.

남(이동복) : 원래 옛날 모내는데 품팔이 하는 사람들은 아주 봄되면 북쪽에 가서 부터 쪽 모를 심어서 내려 오거든.

그래가지고 전라도까지 끝으로 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큰 나라도 아닌데 기후의 차이가 그 정도 있어가지고 딱 그렇게 쪽 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백남준) : 우리 남포 갑문, 그것을 해냈으니까 큰 물이 개성 나오는 고속도로 주변 논밭까지 와 적시고.

그리고 뭐 청년들이 모내기를 하면서 노래부르고 모내기기계소리로 해서 아주 엄청나요.

남(이동복) : 요새 황해도 이쪽으로 무슨 관개수로 개통했다고 그러던데.

북(백남준) : 연백뺨로 나오면서리.

남(이동복) : 보도 나오는 것 같은데.

북(김완수) : 굉장히 크지요.

북(백남준) : 수천리길 물길 공사를 했으니까.

남(김달술) : 남포물이 개성까지 옵니까?

북(백남준) : 예. 그리고 거기다 또 요즘말입니다.

북(김완수) : 그 물이 서울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북(백남준) : 그쪽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 쪽은 비가 최근에 자주 내려요.

그런데 그 강우량도 그냥 많지 않고 마춤하게 내려서 농민들은 뭐 단 비라고도 하고 풍년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밭곡식도 좋고, 모내는데도 아주 유리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좋아합니다.

남(이동복) : 「農者天下之大本」인데 농사가 잘 돼야 사람들 마음도 푸근해지고 평안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렇게 되지요.

북(백남준) : 우리 7차 회담에서 좋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처음 열리는 정치분과위원회인데, 우리 모내기는 처음 오늘 시작하는 거로 되지.

남(이동복) : 그렇시다, 이제 모내기를 오늘 시작합시다.

우리는 어제 연락사무소 간판을 평화의 집에다 걸었어요.

우리 부총리께서 몸소 판문점에 오셔서 가지고 요다음 회의할 때 와보시면 아주 이쁘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2조인가? 1조지요, 명칭. 그게 조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사무소, 북측사무소」 이랬더니, 그

냥 「남측연락사무소」라고,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북(백남준) : 「북남연락사무소 남측연락사무소, 북측연락사무소」

남(이동복) : 그러니까 써보니까 이게 중복이 돼. 중복이 돼서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궁리끝에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남북연락사무소」하고 「(남측)」 이래 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복이 돼요.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연락사무소」 이렇게 되니까, 조금 보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왕 문패를 거는데 조금 모양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북(백남준) : 합의사항 위반이다.(쌍방웃음)

합의서 위반이야.

남(이동복) : 아니 합의서는 양측이 같이 위반하면 위반이 아니라고.(쌍방웃음)

북(백남준) : 우리는 위반하는 것 없으니까, 아, 또 자꾸 거기다 거둬 넣으려고 하지 말고.

남(이동복) : 그러니까 여기도 「북남연락사무소(북측)」 그러세요.

북(백남준) : 아니, 그저 우리는.

그쪽에서 「북남연락사무소(남측)」 이렇게 했다는 거지.

남(이동복) : 그렇지.

북(백남준) : 그럼 뭐 우리 합의서에 없으니까 그거를 인정 안하고.(쌍방웃음)

부르는 것은 어쨌든 남측연락사무소, 남측이라고 부를테니까.

남(이동복) : 그래요. 그런데 간판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 거기
에 「연락사무소」가 두번 겹치니까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위반하면 위반이 안 되니까.

북(백남준) : 난 위반 안하겠다고 그래.(쌍방웃음)

공모자는 안되겠으니까.

남(이동복) : 선의의 위반이니까.

북(백남준) : 어저께 이제 군사공동위원회, 그다음에 협력, 교류분야에서 두개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우리 화해공동위원회는 구성이 못됐단 말이
야.

그렇게 놓고 보니까 상당히 이 정치분과위원회가 좀 면목도 없고 어떤 점
에서는 부끄럽기도 해요.

남(이동복) : 그거는 우리가 새로이 합의하는 거니까.

북(백남준) : 어쨌든 간에.

남(이동복) : 새로이 합의하는 거니까.

북(백남준) : 6차회담후에 북남합의서가 발효돼서 맨 처음 출발한 정치분과인
데, 지금 제일 뒷꼬리에 섰단 말이야, 뒤졌거든.

남(이동복) : 아니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돼요.

우리 정치분과위원회가 여전히 선두에 서 있고.

북(백남준) : 어째서?

남(이동복) : 정치분과위원회가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런 성과가 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북(백남준) : 그래서 어저께 밤에 좀 생각해 봤어요.

북남연락사무소도 어저께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옷을 다 입고 그렇게 하고 신발을 신어야 제격인데, 이것은 옷도 못입고 신발부터 신은 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뭐인가 응당한 빛을 못낸다.

남(이동복) : 연락사무소가?

북(백남준) : 부속합의서 다 해놓고, 공동위원회 다 해놓고, 그렇게 하고 딱 연락사무소 쪽 내놨으면 빛이 나지요.

남(이동복) : 그래요, 부속합의서를 빨리 만듭시다, 빨리 만들어서.

북(백남준) : 그래서 상당히 면목이 없는데, 내뿐만 아니라 이선생도 같을 거예요.

남(이동복) : 면목이 흰하신데 왜 면목이 자꾸 없다고 그래요.

북(백남준) : 부끄럽지 뭐.

남(이동복) : 우리 정치분과위원회 면목은 우리 백위원장예요.

이렇게 아주 면목이 흰하시니까.

북(백남준) : 그래서 이제, 오늘이 북남합의서가 발효된 때로 부터 꼭 석달이 되는 날이에요.

남(이동복) : 꼭 석달 되는 날이에요.

북(백남준) : 그런데 우리 7차회담 후에 또 처음으로 지금 분과위원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종착점에는 다른 분과보다 먼저
가보지요.

남(이동복) : 이견 없어요.

북(백남준) : 좀 협심을 해서.

남(이동복) : 아까 통일각에 와 가지고 보니까, 떡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떡인가 했더니, 그게 바로 만 석달 되는 떡일세.

북(백남준) : 그 我田引水구만.(쌍방웃음)

손님을 위해서 한 거지.

남(이동복) : 원래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래요.

북(백남준) :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 회의의 형식은 어떻게?

남(이동복) : 어떻게 할까요?

한번쯤 우리 공개회의 해볼까요?

북(백남준) : 공개회의!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요.

남(이동복) : 한번 해봅시다.

북(백남준) : 합시다.

남(이동복) : 그러십시다.

북(백남준) : 그럼 관례에 따라서 오늘 내가 사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발언을 하고. 서로 또 물을
것 있으면 묻고. 그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고 그런 순서와 방법으로 하지요?

남(이동복) : 예, 그러십시다.

북(백남준) :

〈북측 기본발언〉

리동북위원장과 남측위원 여러분!

얼마전에 진행된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는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 이전에 북남합의서 제1장 북남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북남화해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데 대해 합의를 보고 《북남전략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정치분과위원회가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전에 수행했어야 할 기본문제에 대한 협의해결을 4개월 뒤로 미루어 놓는 것으로 되지만 앞으로 분과위원회사업을 시한부에 따라 목적지향성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의미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분과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이룩된 쌍방의 합의에 따라 우리 분과위원회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업들을 협의하게 됩니다.

귀측도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지난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채택발효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북남합의서발효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북남전략사무소를 설치, 운영

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해결할 임무를 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의 분과위원회 가운데서 제일 선참으로 발족되어 사업에 착수한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였지만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이 있기 직전까지 북과 남은 서로 의견차이를 확인하였을뿐 어느 한 문제도 타결짓지 못함으로써 결국 분과위원회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게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일이 밝혀져 있는 북남련락사무소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요구와 근본문제인 부속합의서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어서 리행기구문제를 토의하자는 주장이 맞서있었지만 그 리면에는 다분히 여러가지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귀측에서는 첫 회의때부터 그 무슨 《지침》에 따라 아무런 합의서안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 회담외적인 문제를 거론하였는가 하면 우리의 존엄있는 정치체제와 사회제도까지 걸고들어 대화상대방을 자극하면서 기본문제토의를 회피하였습니다.

더우기 귀측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자의로 해석하고 외곡하며 북남합의서를 현 분렬상태를 지속시키는데 리용하려 하면서 회의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북남합의서를 리행할 실천의지가 부족하고 민족적 화해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없으며 분렬지향적인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정치분과위원회는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전에 용당 타결하여야 하며 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능히 타결할 수 있는 문제들마저 해결

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7차 고위급회담마당에까지 끌고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정치분과위원회사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는 북남합의서의 리행전망을 흐리게 하고 내외인민들속에서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비록 늦게나마 부속합의서 작성시일문제, 화해공동위원회 구성문제 등이 합의발표됨으로써 우리는 상정된 문제들을 협의해결할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 이전에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합의문의 발표는 북남쌍방이 민족앞에 다진 엄숙한 서약입니다.

북과 남 어느 일방도 내외에 공표한 이 서약을 드티거나 어길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의 정치분과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북남사이의 합의정신에 맞게, 그리고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사업에 거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기대에 부합되게 상정된 문제들이 협의 해결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제부터 기본문제 토의와 관련한 우리측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오늘 정치분과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협의해결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남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속합의서는 북남합의서 화해부문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대책이 담긴 기본문건입니다.

부속합의서가 없이는 북남합의서리행을 위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할 수 없습니다.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도 부속합의서의 작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속합의서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쌍방사이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것은 크게 형식과 내용 두가지로 갈라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식면에서 부속합의서를 몇개 작성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내용면에서 부속합의서의 조문구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개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귀측은 지난 정치분과위원회 회의들에서 처음에는 그 무슨 《원칙》이요, 《실천과제》요 하는것을 들고 나왔다가 제3차회의때에는 기본상 조항별로 된 5개의 부속합의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명백한 한바와 같이 북남합의서 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들 조항별로 여러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북남합의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하나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화해분야의 합의사항들은 어느것을 막론하고 서로 밀접한 련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실천상에서도 서로 제약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놓여있

습니다.

이러한 호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항별로 따로 따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화해분야의 합의사항들을 통일적으로 원활하게 리행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더우기 부속합의서를 조항별로 만든다면 실천에서 여러가지 복잡성과 어려움을 산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속합의서를 여러개 만들게 되면 문건을 작성하는데서 불필요한 중복이 있을 수 있고 합의를 이룩하는데도 더 많은 품을 들이게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화해분야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여러개 작성하고자 하면서 무려 5개의 안을 들고 나온것은 합의서토의를 지연시키며 특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실천을 뒤로 미루고 부차적인것이나 합의하여 실천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해분야에서 여러개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자는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며 포괄적인 단일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의사항에도 맞으며 합의하기에도 쉽고 실천하기에도 합리적이라고 간주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먼저 하나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는데 합의할 것을 다시한번 귀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부속합의서 내용구성과 관련한 우리측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합의서의 내용구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조항을 북남합의서의 요구와 민족단합의 정신에 맞게 합리적으로 압히는 것입니다.

북남합의서 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바로 작성하자면 용당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야 하며 외세의존적이며 분렬지향적인 일체 요소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속합의서의 작성에서는 또한 그 내용전개를 합리적으로 잘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귀측은 부속합의서가 리행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실천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거기에 《6하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측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측의 부속합의서초안이 그 무슨 《일반론》에 치우치고 있다는 자기식의 해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측이 내놓은 부속합의서초안이 《일반론》에 치우쳤다는 평가는 사실과 맞지 않으며 조항별로 내용이 세부화되면 될수록 《실천성》이 담보된다는 것 역시 사리에 맞는 주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북남합의서의 실천성은 단순히 조문의 수나 세부화 정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이 어떻게 현실성있게 구성되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되게 됩니다.

덧어놓고 《실천성》만을 내세우면서 극히 실무적이고 세말적인 문제까지 부속합의서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분과위원회의 기능에도 맞지 않으며 부속합의서의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공동위원회에서 세부합의서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용당 념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화해공동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 거기에서 화해분야의 합의사항

리행을 위한 필요한 세부합의서를 작성하고 실행하게 되는 조건에서 분과 위원회단계에서 부속합의서를 지나치게 구체화하는것은 타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귀측의 합의서안은 여러가지로 제한성과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의 부속합의서안은 우선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합의서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으며 많은 조항들에 외세의존적이며 분렬지향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합의서가 아니라 대결을 지속시키며 분렬을 합법화하기 위한데 그 목적을 둔 합의서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측의 합의서안은 사실상 북남화해를 위한 근본문제의 해결을 회피함으로써 전반적인 합의사항의 리행을 폭넓고 균형있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길에 난관과 복잡성을 의도적으로 조성해 놓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화해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듯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한갓 요술에 지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귀측은 이에 대하여 응당 뉘우치고 우리의 합의서안에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나는 지난 제1차회의때에 우리측이 내놓은 부속합의서안이 형식과 내용

에서 나무랄데 없는 안이고 북남합의서 화해분야의 합의리행을 확고히 담보하는 합리적인 안이라는 립장에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쌍방사이의 의견차이를 좁히고 부속합의서의 작성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성의의 표시로서 우리측은 이번에 귀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새로운 부속합의서수정안을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측이 준비한 북남합의서 제1장 북남화해를 리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수정안)

북남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에서는 북과 남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① 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문화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② 북과 남은 북남합의서의 화해정신과 조국통일위업에 배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한 각기상대방의 법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한다.

- ④ 북과 남은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찬양하는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 2 조 북과 남은 상대방의 내부분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 ① 북과 남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제도와 질서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자기 의사를 상대측에 강요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리익과 나라의 통일, 북남합의서 리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①항과 ②항에 저촉되지 않는것으로 한다.
- ④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외세의 온갖 내정간섭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제 3 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

- ① 북과 남은 관영, 민영을 막론하고 어떤 언론기관이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다.
-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지명공격을 하지 않는다.
- ③ 북과 남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거나 사실을 외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 류포하지 않는다.
- ④ 북과 남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⑤ 북과 남은 상대측지역에 대한 삐라살포와 전연방송을 중지하며 군사

분계선일대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표어를 비롯한 모든 게시물들을 제거한다.

⑥ 북과 남은 상대방과의 대결을 고취하는 일체 정치행사를 하지 않는다.

제 4 조 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파괴, 정탐, 테로, 포섭, 랍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선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그 어떤 외부의 세력이나 집단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④ 북과 남은 제3국 또는 그의 단체가 상대방을 반대하여 제재나 압력을 가하려는 일체 행위에 합세하지 않는다.

제 5 조 북과 남은 현 정전상태를 북남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① 북과 남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한다.

② 북과 남은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북남합의서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하도록 한다.

③ 북과 남은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④ 북과 남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킨 다음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 보장할 필요한 대책을 협의강구한다.

제 6 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① 북과 남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호상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 ② 북과 남은 대외활동에서 상대방의 리익을 존중하며 전 민족의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의하고 대처한다.
- ③ 북과 남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회의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④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대표부(공관)가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대표부 책임자(공관장) 사이의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 ⑤ 북과 남은 국제적인 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⑥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리익을 침해하는 일체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 ⑦ 북과 남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과 리익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개정 또는 폐기한다.
- ⑧ 북과 남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공동으로 옹호하고 보호한다.

제 7 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의 리행을 위한 북남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

우리측은 수정안 제1조에서 귀측이 계속 주장하는 법질서존중문제를 화해와 통일의 립장에서 공정하게 정리하여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제2조 ①항에서도 귀측의 요구를 참작하여 상대측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질서와 제도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자기 의사를 강요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제4조 파괴전복행위금지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귀측 합의서안의 내용을 절충하는 성의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측이 우리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는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측의 부속합의서수정안의 합리성과 현실성은 그것이 북남합의서의 화해분야를 철저히 리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부속합의서가 실천성 있는 것으로 되자면 모든 조항들의 리행을 철저하게 담보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속합의서수정안은 북남합의서 제1장 화해분야의 6개조항이 정확히 리행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북남합의서 제3조 비방중상중지문제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철저히 해결할수 있도록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7.4공동성명발표후 비방중상중지문제가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하여 철저히 리행되지 못하고 인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데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비방증상증지문제를 현재는 관영에만 국한시키고 앞으로 점차 민영으로 확대시켜나간다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해놓는다면 그것은 지난날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증상문제는 그것이 증지됨과 동시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바로 그렇게 하여야 부속합의서가 명실공히 실천성있는것으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측은 새로운 부속합의서수정안 제3조 ①항에서 관영, 민영을 막론하고 어떤 언론기관이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비방증상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조항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측은 법문제와 관련한 내용전개도 민족적견지에서 조국통일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명백한 바와 같이 북남사이의 화해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가로막은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해치는 구시대의 낡은 유물들을 계속 존속시키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남합의서를 리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측이 부속합의서수정안 제1조 ②항에서 북과 남이 상대방의 법질서를 존중하며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제하면서도 전제로서 북남합의서의 화해정신과 조국통일위업에 배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한에서 그렇게 한다는것을 명기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측은 부속합의서수정안에서 화해와 통일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기함으로써 북남화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측이 부속합의서수정안이 북남화해를 철저히 이룩할 수 있도록 작성한데 대해서는 제5조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 등 기타 여러 조항들에서도 뚜렷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측의 부속합의서수정안이 북남사이의 화해를 실제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것은 우리측의 부속합의서수정안이 철두철미 통일지향적인 안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입니다.

북과 남이 합의를 발효시킨것도 민족적화해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부속합의서가 현 분렬상태를 지속시키거나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되게 하여서는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측은 귀측이 내놓은 5개의 부속합의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조금이라도 저촉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만들면서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측은 귀측안들을 화해와 단합의 정신에서 가능한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우리측은 부속합의서 제2조에서 상대방의 제도에 간섭하거나 상대측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규제할 때에도 이런 원칙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민족공동의 리익과 나라의 통일, 북남합의서리행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제6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문제도 조국통일위업 수행에 유리하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회의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 참가하는 문제, 국제적인 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해 노력할데 대한 문제, 다른 나라들과 맺은 민족적 단합과 리익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개정 또는 폐기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나는 이상에서 우리가 내놓은 새로운 부속합의서수정안의 합리성과 현실성에 대하여 몇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속합의서문제와 관련한 쌍방의 견해차이는 물론 적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과 남이 민족적화해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려는 확고한 립장에 선다면 쌍방사이에서 얼마든지 공통점을 찾을수 있고 합의점에 도달할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는 귀측이 지금까지 귀측에서 주장하던 내용의 많은 부분을 폭넓게 수

용한 우리측의 새로운 부속합의서수정안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옳게 인식하고 이에 동의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북남화해분야의 실천기구인 공동위원회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의 회의와 접촉을 가지었지만 제7차 고위급회담 이전까지 공동위원회문제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측은 부속합의서와 함께 공동위원회를 북남합의서 발효후 3개월안에 발효시키는것이 북남사이의 합의사항이므로 그 실현을 위하여 이미 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때에 종합적인 하나의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내놓았지만 귀측의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귀측은 북남사이의 합의서에 화해분야에서 공동위원회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온다고 구체적으로 밝힌것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협의되는데 따라 문제별로 필요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되 우선 법률공동위원회부터 내오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화해분야에서 북남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고 화해공동위원회안에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들데 대해 합의함으로써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치분과위원회에서 하나의 화해공동위원회를 나오기를 합의한 이상 합의서의 내용조정과 문안정리에서는 크게 문제될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다만 화해공동위원회안에 어떤 실무협의회를 들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는데 이 문제도 쌍방이 합의하여 해결하면 될것이라고 봅니다.

리동복위원장과 남측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정치분과위원회사업을 돌이켜 볼 때 우리모두는 내외인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모든 문제협의를 매우 완만하게 진행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속합의서작성과 화해공동위원회를 내오는 문제를 합의 하고 연락사무소를 발족시키는 등 일련의 전진도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치분과위원회사업을 자기 궤도에 올려 세우고 본격적으로 진척시켜 나갈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이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열린 오늘의 제4차 회의에서 북남쌍방이 서로 화해하고 협조하는 정신을 살려 우선 부속합의서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결함으로써 내외인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줄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이동복)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준 위원장!

그리고 북측위원 여러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지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들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쌍방관계를 개선하는데에 이바지하는 좋은 합의서들을 생산해냄으로써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우리 쌍방은 남북연락사무소를 비롯한 군사공동위원회, 교류·협력공동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들을 채택·발효시켰습니다.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문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이행기구들을 쌍방이 합의한대로 차질없이 기일을 지켜 발족시킬 수 있게 한 것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서로의 실천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대한 첫 선물을 민족앞에 내놓으려는 염원을 담아 금년 8.15해방 47주년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 문제는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남북대화가 처음 시작되던 때부터 제기되어 지난 20여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남북간의 중요한 현안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산가족 문제는 지난 1985년에 이르러 50명씩의 제1차 고향방문단 교환이 실현된 이후 7년만인 이번에 다시 각기 100명씩의 제2차 교환방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남북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이 아직도 규모면에서 제한적이고 정례화되지 못한데 대하여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나 이번의 합의가 차질없이 실천됨으로써 전면적인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쌍방은 우리 남북정치분과위원회가 해야 할 과제로서 오는 9월 15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될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두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있게 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남북간의 이러한 합의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문제를 두고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정치분과위원회의 토의를 크게 진전시키고 활성화한 것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처럼 제4차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곧 이와같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발전적인 합의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남북기본합의서가 규정한대로 그동안 우리 정치분과위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연락사무소 문제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그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고 5월 18일 바로 어제 쌍방

구성원의 상호명단 통보와 함께 그 운영도 정식으로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북정치분과위원회가 해야 할 남북기본합의서 제7조의 기본임을 일단 원만히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남북정치분과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남북기본합의서』 제8조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대로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그 이행기구인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 맡겨진 이러한 임무를 정해진 기간내에 원만히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회의를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견지에서 지난 세차례의 정치분과위원회 회의와 한차례의 위원접촉에서 나타난 쌍방간의 견해차이와 회담 부진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통일 3원칙에 관한 쌍방간의 견해차이와 관련하여 야기된 회담분위기 문제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누차 우리측의 입장과 견해를 밝힌바 있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서는 더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둘 것은 쌍방간에 견해차이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견해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를 진지하게 토의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화상대방에게 『분열주의』나 『외세의존』이니 하는 일방적인 비난을 함으로써 회담분위기를 악화시킨다면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며, 앞으로의 회담진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양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쌍방간에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준수해야 하며, 합의사항을 고의적으로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귀측은 지난, 세차례의 정치분과위원회와 한차례의 위원접촉에서 『일괄 합의, 동시실천』이라는 일방적인 원칙을 내세워 남북화해분야에 관한 단일 부속합의서와 단일 공동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만 남북연락사무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설치·운영하기로 되어있는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빗대어 합의사항에도 없는 단일 부속합의서와 단일 공동위원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귀측의 의도가 과연 어디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고의적으로 왜곡시키는 귀측의 이러한 『전제조건』 주장은 정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무려 2개월여 동안 공전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의 정치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합의사항을 왜곡하는 일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회의진행에서 어디까지나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엄격히 이행·준수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문제해결의 잣대와 기준도 바로 남북 기본합의서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지에서 어디까지나 남북화해분야의 구체적 이행대책부터 먼저 협의·해결하고, 이에 따라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그후 이행기구인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순서로 토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괄합의, 동시실천』이란 주장으로 합의된 것마저 실천을 무한정 뒤로 미루어서는 안되며, 합의된 것은 어디까지나 곧 실천에 옮겨 나가자는 우리측의 『건별합의, 즉각실천』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나는 앞으로의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보다 원만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우리측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측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특히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은 우선 합의서를 몇 개로 할 것인가 하는 합의서와 형식보다는 그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실질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과 다음으로 합의서의 내용에는 귀측이 말하는 것과 같은 남북화해분야를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 실천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형식논쟁을 지양하기 위한 과감한 양보조치로서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단일 부속합의서(안)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의 필요에 따라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특정사안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남북화해분야에 관한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라 한다) 제1장 남북화해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합의서의 목적은 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조치를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사이에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남북사이의 특수관계는 통일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남북사이에는 각기 상대방의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민족내부관계이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연합 회원국간에 이루어지는 상호관계인 2중의 관계이다.

- ② 남북사이의 특수관계는 상호관계의 주체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관계이다.
- ③ 제①항과 제②항은 기본합의서 여타조항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의 기초가 된다.

제2장 체제(제도)인정·존중과 내부문제 불간섭

제3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 정부의 해당지역에서의 관할권을 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 및 법질서를 존중하며, 이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의 어느 일방도 국제적으로 다른 일방을 대표하지 아니하며, 다른 일방을 대리하여 행동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외교정책과 외교행위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이 제3국과 맺은 쌍무적·다무적 관계를 존중하고 이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제도적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 3 장 비방·중상 중지

제 9 조 남과 북은 비방·중상 중지의 적용대상을 우선 상대방의 특징인과 체제 및 정책으로 한다.

상대방의 체제라 함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 및 법질서를 말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비방·중상 중지의 행위주체를 쌍방 국가기관과 집권 정당 및 공영 언론기관을 포함한 공공단체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특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 정부를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법질서와 각종 정책을 왜곡하거나 이에 관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각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실상에 대한 학문적 견해
2. 상대방 통일정책과 방안에 대한 이론적 비판
3. 상대방 인권문제에 대한 실상보도
4. 역사적 사실, 기록물이나 현재 사실의 보도
5. 외국언론의 인용보도

제15조 남과 북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각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대상을 다음 각호로 한다.

1.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공단체의 각종 성명, 담화, 논평
2.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 등 각종 언론매체
3.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 서적, 교과서 등 각종 출판·인쇄물
4.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공단체가 제작하는 영화, 연극, 문화작품, 미술, 음악 등 각종 문예 창작물
5.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군중집회와 국제회의 등 공개석상에서의 연설·토론
6.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제16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제3장 비방·중상중지 부문의 이행·준수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 4 장 파괴·전복행위 금지

제17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간첩 및 무장게릴라의 조직, 훈련, 지원 또는 침투 행위
2. 상대방 주민의 포섭, 납치, 살상 행위
3. 상대방의 항공기, 선박, 기차, 자동차 기타 교통수단의 파괴, 납치 또는 그 탑승자의 억류, 살상 행위

4. 외국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상대측 인원 에 대한 납치 또는 살상 행위
5. 상대방의 제반시설과 기물에 대한 파괴 행위
6.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의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
7. 기타 상대방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폭력,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행위

제18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조직을 자기측 지역 안에 결성하거나, 이를 조장, 지원 또는 비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결성된 상대측 지역의 반체제 단체나 조직을 지원하거나, 이러한 단체나 조직과 회합, 통신 등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단체나 조직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지하고 국제테러 방지에 관한 모든 국제협약을 이행·준수한다.

제 5 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제22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1.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공단체의 각종 성명, 담화, 논평
2.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 등 각종 언론매체
3.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 서적, 교과서 등 각종 출판·인쇄물
4.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공단체가 제작하는 영화, 연극, 문화작품, 미술, 음악 등 각종 문예 창작물
5.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군중집회와 국제회의 등 공개석상에서의 연설·토론
6.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제16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제3장 비방·중상증지 부분의 이행·준수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비방·중상 증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 4 장 파괴·전복행위 금지

제17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간첩 및 무장게릴라의 조직, 훈련, 지원 또는 침투 행위
2. 상대방 주민의 포섭, 납치, 살상 행위
3. 상대방의 항공기, 선박, 기차, 자동차 기타 교통수단의 파괴, 납치 또는 그 탑승자의 억류, 살상 행위

4. 외국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상대측 인원 에 대한 납치 또는 살상 행위
5. 상대방의 제반시설과 기물에 대한 파괴 행위
6.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의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
7. 기타 상대방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폭력,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행위

제18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조직을 자기측 지역 안에 결성하거나, 이를 조장, 지원 또는 비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결성된 상대측 지역의 반체제 단체나 조직을 지원하거나, 이러한 단체나 조직과 회합, 통신 등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단체나 조직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지하고 국제테러 방지에 관한 모든 국제협약을 이행·준수한다.

제 5 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제22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남북 당사자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현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현 군사정전협정 체제를 변경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②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즉각 정상화한다.
- ③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그 활동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 6 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5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아니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6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공관이 함께 상주하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간 상호 연락하고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며, 그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쌍방공관이 장이 현지실정에 맞도록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를 통한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산하기구가 다수 소재하는 뉴욕, 제네바, 비엔나에서 남북대표부간 협의를 정례화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나간다.

제28조 남과 북은 민족적 이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 ① 국제회의 참가 대표단간 사전협의를 통해 연설문 및 회의에 대비한 상호입장과 의견을 교환한다.
- ② 민족적 권익의 옹호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협의를 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한다.
- ③ 국제회의시 영문 호칭은 남측은 Korea, R.O. 북측은 Korea, D.P.R.로 표기한다.

제29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문제, 임원국이 되는 문제, 사무국에 직원을 진출시키는 문제, 국제회의·국제대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30조 남과 북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상호 협조한다.

이러한 공동협력사업은 이미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을 검토중에 있는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제31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고취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제 7 장 수정 및 발효

제32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33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북측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나는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우리측 합의서(안)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귀측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측의 이 새로운 합의서(안)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과 그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새로 내놓은 우리측 합의서(안)은 지난 제3차 정치분과위원회때에 제안했던 우리측의 다섯개 부속합의서(안)들을 하나로 종합하여 총 7장 33조로 된 단일합의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우리측의 부속합의서는 협의와 합의의 토대로 관례에 따라 각자의 합의서 초안을 내놓고 토의하자는 귀측의 주장과 아울러 여러개의 상이한 부속

합의서를 하나의 단일합의서 안에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여 보자는 귀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단 단일 부속합의서의 형태로 수정·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측의 단일 부속합의서는 그 내용 가운데 일부라도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도의 합의서에 이를 담는 한편 별도의 실천기구가 필요하면 이를 추가로 만들고 또 그러한 별도의 실천기구가 불필요하다면 그런대로 먼저 이루어진 합의사항은 먼저 실천에 옮기는 길이 봉쇄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남북화해분야에서 복수의 부속합의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합의서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관련 조항들의 정당한 해석에 의하면 우선 기본합의서 각 조항들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축차적으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안에 남북화해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일념에서 우선 합의를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단일 부속합의서의 형태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두는 바입니다.

둘째로 우리측의 새 합의서(안)에는 귀측 부속합의서(초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면 『특수관계』 등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귀측도 아다시피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는 “나라

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가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도기 동안의 남북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관계』는 과연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개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남북기본합의서 시대의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수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있어야만 기본합의서는 진정한 남북화해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합의서가 남북 당국사이에서 합의·서명·발효되었다는 사실은 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의 개념을 스스로 분명히 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본합의서는 쌍방정부의 총리들이 합의하여 서명하였고 서명란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공식으로 사용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석이 재가하여 발효시켰습니다.

즉, 이 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 상호 인정·존중하는 토대위에 그러한 실체와 실체간에 통일을 지향

하는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남은 대한민국이고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기본합의서에서 남북사이에는 쌍방에 존재하는 실체들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내부관계 속에서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엄숙히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어떠합니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같이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국제연합헌장의 이행·준수 의무를 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에서의 남북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국제연합회원국간의 관계임을 남북쌍방이 이미 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러한 과도적 2중적인 「특수관계」의 내용이 남북기본합의서 모든 조항들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특수관계』의 명확한 개념을 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에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측 새 합의서(안)은 남북화해분야의 제1조에서 제6조까지에 이르는 각 조항들의 이행·준수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겨야 할 부속합의서들은 마땅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행대책들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각 분과위원회의 임무가 기본합의서 해당부문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각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그러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그 기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기본합의서에 이미 담겨져 있는 남북간의 합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기본합의서에 담겨져 있지 아니한 사항들, 더구나 기본합의서 내용 협상과정에서 논란 끝에 이미 철회한 사항들을 다시금 부속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부속합의서라는 이름으로 기본합의서를 개작·변질시키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분과위원회의 임무를 벗어나는 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고위급회담에서 거론되어 기본합의서를 수정·보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사항들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는데 있는 것이지 기본합의서의 합의사항들을 『구체화』라는 명분으로 다시 『세항』으로 쪼개는 데 있지 아니합니다.

더구나 부속합의서가 기본합의서의 조항들을 단순히 『세항화』하거나 기본합의서와 똑같은 그저 선언적·원칙적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된다면 당연히 이행·실천기구여야 할 공동위원회에 가서 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새로이 협의·해결하여야 하는 모순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면에서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저 또하나의 합의문서로 다른 합의문서를 대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측의 새 합의서(안)은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의 각 조항들을 합의사항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측의 새 합의서(안)은 제1장에서는 총칙을, 제2장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을, 제3장에서는 제3조를, 제4장에서는 제4조를, 제5장에서는 제5조를, 제6장에서는 제6조를 그리고 제7장에서는 수정 및 발효를 각각 담아서 남북화해분야의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측이 내놓은 이 새 합의서(안)을 기초로 남북화해분야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하고 이에 따라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에 맡겨져 있는 임무를 정해진 시한내에 완전히 토의·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다음으로 나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우리측 합의서(안)을 새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원래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해야 할 임무는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먼저 협의하고, 이에 따라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그 후 해당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그동안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기구인 남북정치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계속 주장해 온 귀측 주장을 고려하여 지난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둘 것을 전제로 한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는데 동의하였으며, 이를 제8차 고위급회담 이전까지 발족시킬 것에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쌍방은 오는 9월 15일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토의 해결하는 것과 함께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측이 이번에 부속합의서(안)과 함께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 관한 합

의서(안)을 새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준수·이행하려는 공명정대한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일은 부속합의서부터 먼저 협의 해결하고 그후 화해공동위원회 문제를 협의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해결 순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쌍방간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화해공동위원회에 주어야 할 임무와 기능을 먼저 부속합의서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측도 과거 같은 견해를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으므로 반대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우리측 합의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라 한다) 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기본합의서 해당부문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이하 “화해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화해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

다.

- ② 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③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④ 쌍방은 화해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⑤ 쌍방은 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선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증상증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이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방안은 화해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2 조 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화해분야 해당부문의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시행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 ③ 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화해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북측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나는 우리측의 새 제안인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합의서(안)』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귀측이 오늘 내놓은 우리측의 이 새 합의서(안)들을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남북화해분야에 관한 부속합의서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조속히 작성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오늘 이 회의에서부터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을 가지고 즉시 축조토의에 들어갈 것을 제의합니다.

나는 귀측에서 제시한 부속합의서(안)은 우리측 안을 조항별로 축조토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항별로 함께 토의하여 원만한 절충과 타결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맡고 있는 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서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원칙적 차원에서 상호 입장의 접근이 이루어진 다음에 문안과 자구정리 단계에서 위원접촉을 갖는 것이 능

를적이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위원접촉을 갖는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나는 이러한 우리측의 새 제안에 대하여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북(백남준) :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자기 말씀에서 이 회담분위기를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문제 토의를 하자면 회담에 나와서 회담외적인 이런 문제들을, 소관 밖에 문제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복잡성을 조성하고 난관을 조성하는 이런 것은 삼가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분위기 된다.

그리고 쌍방이 합의한 이런 법적 문건들, 합의 문건들, 합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왜곡하거나 수정하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측에서 아까 우리가 무슨 귀측에 대고 분열주의요, 외세의존이요 한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없고 그런 구체적인 말하자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만 한다면 좋은 분위기에서 문제토의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쌍방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왜곡한다고 하면서 일괄 합의 동시 실천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그런 다음에 그쪽에서 선별 합의, 즉각 실천의 원칙을 제기 했는데 그대로 하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거꾸로 된 얘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괄합의 동시실천」 이것은 쌍방의 합의 사항입니다. 이거는 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때에 고위급회담의 의제를 앞서는 문제 때부터 말하자면 정치적 대결, 군사적 대결, 협력 교류 가운데서 어느것을 의제의 앞에 놓느냐, 이거는 토의 순차가 아니다.

이거는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 토의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만큼 어디까지나 역시 토의를 일괄하고 실천도 일괄한다. 말하자면 「동시실천한다」 그것이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귀측총리가 제 4 차 회담 기본발언에서 말하자면 3개의 이런 합의서 안을 제안하다가 단일합의서로 말하자면 제안하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북이 일괄합의 동시실천을 주장해온 것을 양해해서 우리는 화해와 불가침, 협력교류를 하나로 엮은 그런 안을 제안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일괄합의 동시실천」 이 원칙은 쌍방의 합의 사항이다. 그렇게 일러둡니다.

그 다음에 기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동복위원장이 이번에 하나의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가 7차회담 끝나고 판문점에 나올 때 차안에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서는 마주 앉아서 시간적으로 얼마 걸리지 않고 되는데 이것을 먼저하자고 하니까 부속합의서부터 하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부속합의서 안만 호상 가지고 나오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내은 문제에 대해서 역시 우리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부속합의서를 한 다음의 이제 발언에서 이따가 내용조정과 문안정리를 하고 채택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반대 없고요. 그런데 부속합의서는 단일합의서를 가지고 나와서 아주 좋은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견해를 말씀 드리면 우선 그 내용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구조면에서 볼 때, 그쪽에서 단일 합의서를 가지고 왔지만 1조하고 2조를 하나로 합쳐서 한개의 章으로 설정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 독자적인 그런 묶이 있는 것만큼 그거는 갈라서 해도 다른 장과 조와 같이 장을 설정해도 무방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역시 말하자면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했고 구조상. 내용상 볼 때 우리의 것을 수용한 게 하나도 없다.

여전히 분열고착화, 합법화를 위한 그런 말하자면 내용들이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왔지만 결국 그쪽에서 전번에 내놨던 이 다섯개의 부속합의서 안을 그저 한 고리에다 꿰었을 따름, 이것은 종전

다섯항의 再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부속합의서 안 가운데서 내용토론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몇가지 말하자면 먼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인가, 부속합의서 안을 하나로 우리가 놓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여러개의 합의서도 만든다는 것, 이것을 여유를 뒤야 된다. 그리고 공동위원회도 하나로 나오는 것 합의를 했지만 역시 그것도 필요하다면 여러개 나온, 복수로 나온다는 것, 그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되 거기서 먼저 합의되는 것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먼저 실천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부속합의서, 원래 쌍방 합의사항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배치되는 것이고 더구나 부속합의서를 8차회담 이전에 우리가 완성하게끔 쌍방이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그것에 관해 무슨 그렇게 까지, 뭐 그렇게 될 문제도 없겠거니와, 이것은 엄연히 일괄합의를 해야 된다.

일괄합의를 하고 그리고 실천해서 쌍방이 합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토론해가지고 먼저 실천할 수 있다는 이런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외 자체를 갖다가 원칙으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 원칙은 어디까지나 일괄합의, 일괄타결이고 그리고 예외는 우리가 두자, 그런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귀측이 이제 그 부속합의서를 내은 설명에서 특수관계 문

제, 특수관계 문제 전번에 이거 이동복 위원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무슨 목적이요 하는 그런 문제를 그걸 다 합의서에서 빼내어, 합의서의 면모에 잘 맞지 않고, 그건 또 자명한 거고 그러니까 빼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특수관계라는게 아주 말하자면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북남합의서를 이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전번 3차회의때 귀측 기본발언에서도 쌍방의 국호를 이렇게 서너, 너덧군데서 들고 나왔었는데 그 때도 사실 그건 듣기는 좀 거부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국호들을 공식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를 또 거론하시고 그리고 이 특수관계란 실체 대 실체 간의 관계다.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하시고 동시에 이런 특수관계라는 것은 다 국제연합의 의무를 지는 2중관계다.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수관계는 북남합의서의 서론에 명백합니다. 거기에 무슨 다른 그런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습니다. 명백하다. 이걸 결과적으로 뭐인가 이걸, 결국은 실체 대 실체의 인정을 하자, 하는데 궁극에는 여기에 종착되는데, 우리는 명백히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 서로 다른 실체 사이에서 어떻게 통일을 이룩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 하는 거지 하나의 실체를, 하나의 실체라고 한다 하게 되면, 하나의 실체만이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이런 만남도, 이런 마당도 필요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실체를 이런 각이한 실체를 호상 인정하고 도장을 찍는 놀음을 하자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불필요하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상 상대방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도장 찍으려고 한다면 뭐인가 우리 북과 남사이에는 통일이 목표라는게 없어집니다. 통일이 목표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또 통일운동이라는 그 자체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영영 평행선으로 영영 살아가야 되고, 하나의 혈육 하나의 민족을 영원히 갈라놔야 된다. 이런 도장 찍는 놀음을 누가 하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둡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위원장님 말한 쌍방이 합의서들을 내놨으니깐 그것을 이제 토론하자, 토론하고 그 다음에 위원접촉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상당한 정도의 문제가 성숙된 다음에 문안정리 단계에 들어가서 위원접촉을 탄생시키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반대가 없습니다.

반대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는 갯수가 이렇게 결정된 조건에서 부속합의서의 갯수가 결정된 조건에서 말하자면 이위원장과 내하고 말하자면 이런 그 문제와 관련된 그 내용과 관련된 입장들을 호상 밝히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걸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지하게 해결해서 빨리 낙착을 짓자하면 문안정리 단계이전 내용조정 단계에서도 위원접촉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 이후 곧 위원접촉을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동북위원장이 제기한대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그러면서 쌍방이 이제는 다 내놨으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내용 조정을 해보자 그런 의견입니다.

남(이동복) :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우선 이제 우리측이 오늘 부속합의서를 단일문건으로 통합해서 제시하고 또 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제시한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귀측에서 수정해서 내놓으신 이 부속합의서 안에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당초 우리측이 5개의 독립된 부속합의서 안을 내놨을 때 들어 있던 내용 가운데서 극히 일부를 수용을 한 부분이 눈에 띄는 점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에서 우리의 임무가 되어 있는 부속합의서를 타결시키는 방향으로 남과 북이 다같이 성실하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백위원장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네요. 회담분위기 문제는 오늘은 다시 추가해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고위급회담과 고위급회담에서 파생된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대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적용시

키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과 관련해서 남과 북이 분명히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일괄합의 동시실천이라고 하는 원칙이 언제 도대체 합의가 됐느냐? 내 기억으로는 이런 합의가 있었던 기억이 없는데, 지금 백위원장께서 우리 정원식총리께서 4차 회담때, 우리가 포괄적인 단일, 기본합의서를 갖다가 단일안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일부 수사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때 정총리 말씀은 그동안에 북측에서는 계속해서 단일문건으로 해야된다는 의견을 얘기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말하자면 통합하는 안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 일괄합의 동시실천 원칙을 받아 들였거나 양해 했다는 말씀은 어느 기록에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제는 우리 남북대화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인데, 남북관계라고 하는 이 복잡다기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가는데 도대체 일괄합의 동시실천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결국 이것은 일괄합의 동시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빙자해서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돼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북측에서 일괄합의 동시실천이라고 하는, 아마 원칙을 오늘 이 자리에서 포기를 하실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괄합의 동시실천이라고 하는 원칙이 남북고위급회

답에서 채택되거나 합의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대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아마 귀측에서 말하는 일괄합의 동시실천 원칙은 그대로는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백위원장께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룬다 그러셨는데,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백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외적인 사항들이 하나하나 자주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것이 축적됨으로 해서 남북관계의 근원적인 해결에 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저 나름의 전망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의 내용에 대해서 구조면에서나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구조면에서 1조와 2조를 왜 통합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일리가 있다고 점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 정치분과위원회 소관분야가 돼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화해분야, 남북화해분야의 1조부터 8조까지 조항들은 1,2조는 정치적인 문제를 다뤘고 3조는 선전 문제를 다뤘고, 4조는 소위 파괴, 전복, 테러 문제를 다뤘고 5조는 국방문제를 다뤘고 6조는 외교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개념으로 통합을 해보니까 1,2조는 묶였기 때문에 이것

을 그렇게 다룬 것이지, 1,2조를 우리가 이제 토의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가르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용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짚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3가지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제가 기본발언에서 여러개 합의서 문제를 얘기했고 또 복수의 공동위원회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합의하는 것은 합의한 대로 먼저 실천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백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번 7차회담에서 내가 우리쪽 임동원 대표하고 귀측의 안병수 대표, 최우진 대표하고 대표접촉을 할 때에 이 문제가 분명히 짚어졌어요.

뭐냐 하면 『합의서도 복수가 될 수 있고 실천기구도 복수가 될 수 있는데, 우선 하나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분명히 양해가 돼있습니다.

『우선 하나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나와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우선 하나의 부속합의서에 답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실천기구를 만들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부속합의서와 하나의 실천기구 문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남북간에 기본합의서가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은 남북간에 기본합의서에 있는 합의사항을 이행·준수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에 만든 부속합의서로 끝

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이 안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남북관계가 동태적으로 움직이는데 새로운 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불가피하게 그 부속합의서가 또 새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나와 있는 부속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별개의 부속합의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느쪽으로도 절대화 시킬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잠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특수관계는 오늘 깊이 들어가는 것을 난 피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준수하는데 있어서 특히 정치분과위원회가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문제에 있고 또 내 판단으로서는 우리가 그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 있는, 서문에 있는 몇가지 사항들은 불가피하게 우리 남북정치분과위원회가 관리를 해줘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해줘야 될 문제는 바로 남북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과 북 공히 통일지향성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공히 절대적인 통일지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합의서를 탄생시켰고 이 고위급회담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다만 고위급회담이 지는 임무가 됩니까? 북측에서도 그동안 여러차례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고위급회담의 임무는 통일문제 그 자체가 아니
예요. 통일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과도기를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어 내
는 것이 고위급회담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일지향노력을 하
는데서 중요한게 뭐냐? 출발점이 중요해요. 출발점이.

이미 우리가 통일이 돼 있다고 그런다면 이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사적인 현실이 남북관계는 여기 우리가 특수관
계로 지금 설정해 놓은, 제시해 놓은 그런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예요. 그러나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얘기한게 없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우리가 기본합의서 1조에서 규
정하고 있으니깐 그것을 명백히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이 여러가지로 해석과 원칙적인 여러가
지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산으로 가다 보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다보
면, 산으로 가는 이런 우왕좌왕의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조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측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도 아마 북측에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용어의 어떤 정의라든가, 또 이런데 대해서 그런데 이 의문들이 다 제
기돼 가지고 그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친절하게 서로
설명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오해나 그 이해를 부족하게 갖는 부분

이 없어져야만 이 부속합의서는 완전하게 타결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오늘 짚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오늘 수정해서 내놓은 북측의 부속합의서 중에서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좀 제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본합의서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나 이 분과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이 기본합의서의 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측의 부속합의서 안을 보면 몇개 조항들은 분명히 기본합의서 타결과정에서 이미 정리가 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예컨데 1조 3항, 『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 한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합의서에서 많은 논란끝에 귀측에서 철회했어요.

철회한다는 말씀을 바로 우리 대표접촉에서 백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게 있고 또 4항에 『북과 남은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찬양하는 언론·출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것도 분명히 철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조 1항에 『북과 남은 상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와 질서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자기 의사를 상대측에 강요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이것은 지난번에 내놓으셨던 안에 두개 항목을 통합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일부는 분명히 기본합의서 타결과정에서 철회된 겁니다.

북(백남준) : 몇조 몇항요?

남(이동복) : 2조 1항.

그 다음에 또 하나 6조 7항에 『북과 남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개정 또는 폐기한다.』 이것도 우리가 기본합의서 타결 과정에서 분명히 철회된 거란 말예요.

이 철회된 것이 어떻게 여기 다시 들어 오느냐. 그러면 이것은 기본합의서를 개작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분과위원회의 임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특수관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합의한.

그것은 우리가 사실 기본합의서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 부속합의서에 설명한, 설정한 특수관계 내용은 기본합의서에 우리가 서술하고 있는데에서 더하거나 덜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우리 부속합의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귀측안에도 있는데 『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정치제도』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니까? 이 「상대방」이 누가 되느냐 말이지요.

이것을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기본합의서 하고 부속합의서 하고는 산과 바다에 차이가 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또 계속해서 가령 『북과 남은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찬양하는…….』 그 「상대방」은 누구이냐? 이런 것이 이제 분명치 않아집니다.

계속 「상대방」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귀측안에 앞으로 내용토의에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령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의사를 상대측에 강요한다.」 「자기 의사」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과연 적절한 표현이나 말이지요. 자기 의사를 상대측에 강요한다고 그럴 때에, 이게 주체성을 띠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은 一波萬波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백개의 문제를 사실은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가지 그런 막연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걸리느냐, 우리가 특수관계라는 것을 명백하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만 이런 문제는, 이런 막연한 상태를 벗어나서 구체성을 띤 항의 문서가 될 것이다, 라는 총정에서 우리쪽의 부속합의서는 거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부속합의서를 기본합의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안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그냥 세항만 나열해서 공동위원회에다 주면 공동위원회에서 또 이행과 준수를 구체적 대책을 또 협의해야 된단 말예요.

또 거기서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시행세칙」을 만든

다 그러는데, 그 「시행세칙」도 또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행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어디서 나오니까?

이러한 염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우선 북측의 부속합의서를 보고 개괄적으로 느끼는 의문 부호들이 거기서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마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백위원장께서 또 언급을 하시겠지요. 듣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일단 우리도 사실 이번에 혁명적으로 새로운 발상에 입각해서 부속합의서를 정비해서 내놨고 또 북측에서도 오늘 내놓은 부속합의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가 과거에 내놨던 그 부속합의서 내용중에서 일부 수용한 것도 있고 표현을 바꾼 것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는 것은 오늘 피하고, 일단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도 북측안을 아주 깊이 연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도 북측에서 좀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서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이 다음 회의 때 서로 많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을 서로 하면서 여러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분명치 않은 것은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해의 기반을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내 욕심 같아서는 이게 우리가 9월 15일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과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 그

빈도를 조금 자주 갖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과위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꼭 한 달에 한 번씩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치분과위원회는.

북(백남준) : 그렇게 하면 합의서 위반인데, 『분과위원회 한달에 한번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남(이동복) : 들이 의견을 맞춰서 위반하면 위반이 아니라니까.

북(백남준) : 아니 글썄 나는 위반 않겠다는데.(쌍방 웃음)

남(이동복) : 그래서, 내 의견은 분과위원회 빈도를 좀 자주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그저 우선 오늘 오간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의견이 머리에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백남준) : 길게는 말씀 안드리겠습니까마는 이 일괄합의 동시실천의 원칙 문제, 그거는 엄연히 말하자면 쌍방의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말씀한테 대해서 말씀 드리면 1조하고 2조를 하나로 합쳤다고 하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그쪽에서 하셨는데, 우리도 그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는데, 이제 그쪽의 구조상에 이렇게 볼 때는 장을 이렇게 해 놓으면 기본합의서에 그 조항의 어디 맞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그것도 연구를...

남(이동복) : 아니 무슨 조항?

북(백남준) : 1조는 『북과 남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이동복) : 그거 연구할게요.

북(백남준) :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 복수 문제, 공동위원회 복수 문제,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부속합의서를, 또는 앞으로 새로운 합의를 분과위원회가 탄생시킬 일이 있다.

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실무협의회가 나오는데, 또 우리 화해공동위원회 말고 또 다른 것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엔 그거 나오자 그런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남(이동복) : 그런 뜻이지요.

북(백남준) : 그거 우리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 문제는 뭐 이거 꼭 하지 않으면 우왕좌왕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건 좀 저희들 견해하고 차이 있습니다. 그럴 우려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무슨 「상대방」이라는 것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자기 의사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명백히 안하면 안된다는데, 그거야 「상대방」이라고 그러면 그 집에서 우리를 보고 「상대방」이라고 하면 북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그 집에 대해서 「상대방」이라고 하면 남을 보고 말하는 거지, 그거야 무슨 오해될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자기 의사」라는 게 뭐야? 북의 의사를 남이 강요 안하고 남의 의사를 북에 강요 안한다는 말인데, 거기에 무슨 오해될 게 없다고 이렇

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의문을 제기하신다고 하면서 「1조 3항, 4항」, 「2조 1항」, 「6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무슨 북남합의서를 채택할 때 철회했던 건데, 왜 분과위원회 열렸을 때 또 먹여보자 그래서 하는 것 아니라는 것, 깊이 우리 안을 가서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서 1조에 그 「사상 문제」를 넣었는데, 그건 이제 뭐인가, 제도라는게 사상에 기초하지 않고 이런 말하자면 사상누각과 같은 그런 제도는 있을 수 없습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쪽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그 다음에 아까 타 조약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그 안을 제기하는데, 「다른 나라와의 관계, 다른 나라와의 체결된 협약들, 이런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도 역시 같습니다.

그 때 이위원장이랑 북남합의서를 만들 때, 마지막에 수정, 발효 조항에다가 그것을 계속 넣겠다고 하다가 그쪽에서 처리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는 또 뭐인가, 그 「영향 안준다는 것」 이번에 또 넣어 놨는데, 어차피 북남합의서를 실천하자고 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된다 말입니다. 걸림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걸 풀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것이 뭐인가? 완전히 무장해제 된다. 쓸모 없는 걸로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로 아시고 더 깊이 연구를 해 주시오.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우리 얘기한 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체적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 생각하고 그쪽에서 생각하는게 좀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차원이 달라서 그러는데 그 구체성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서 공동위원회에 넘기면, 공동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그 때 이위원장이 말씀하셨던 「6하원칙」과 같은 건데요. 「누가,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게 공동위원회 집행하자면, 그저 뭐인가 하면 우체통처럼 편지를 갖다 집어 넣으면 와서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체통이 어느 방향으로 보내야 빨리 가겠느냐 어떻게 보내야 되겠느냐 논의하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구체성」이라는 그 개념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위원장이 쌍방이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내놔기 때문에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건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연구하는데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두가지 저희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쌍방이 내놓은 두개의 부속합의서 안을 대비해 보면 몇가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북남합의서가, 부속합의서가 북남합의서의 정신에 맞게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못 한가 하는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이 북남합의서는 어디까지나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확인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거래의 염원에 따라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를 이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합의서 안은 이 원칙과 요구에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속합의서는 북남합의서의 이 정신에 맞게 작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형식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해당부문의 조항들, 모든 조항들을 빠짐없이 그대로 얹히고, 그에 해당하는 순차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런 항목들을 전체해 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화해 부문의 모든 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 대책들을 빠짐없이 규제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귀측 부속합의서안을 보면, 예컨대 「특수관계」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합의사항에 맞지 않는거다. 이런 결국 뭐인고 하면 좋은 것이 못된다. 통일 지향적이 못된다. 그런걸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하고 귀측 합의서안은 이밖에도 말하자면 현재 우리 갈라진 이 상태를 고착시키는데 말하자면 작용하는 그런 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습니다.

그래 뭐인가하면 이것 보면 국제무대에서 협력에 관한 귀측 합의내용 보면 북과 남을 두개의 국가로 호칭 명기하자는 영어표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우리는 필요없겠다. 지금까지도 다 해온건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것까지 도장을 찍자, 이럴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결을 지속시키고 화해를 저해하는데 복무하는 이런 내용들이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들면 『상대방의 법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아니 한다.』 이걸 아무런 전제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오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렇게 되면 뭐인가, 이 대화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한 악법까지도 다 승인하라, 우리한테 그런걸 요구하는 거나 같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비방증상 중지문제章에서 뭐인가 하면 비방증상의 행위 주체는 「쌍방 국가기관, 집권당, 공영, 언론기관 포함한 공공단체」 이렇게 한정시켰는데 이거는 비방증상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복무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7·4공동성명때 했다가 또 하루아침에 싹 먹어 준 것 같은 그런 전철을 밟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런 말하자면 통일, 당국 주도하에 이런 통일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그런 내용들도 적지 않다는 거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사명에, 기능에 맞게 우리 부속합의서가 작성됐는가 안됐는가 하는걸 호상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가 간단히 대답을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보십시오, 이것 비방증상 문제 실례 하나 들면 지나치게 그쪽에선 구체화 하려고 한데서부터 오히려 모호하고 빈구석이 난게 많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보시요. 「상대방 정치, 경제, 사회 실상에 대한 학문적 비판, 상대방 통일방안에 대한 이론적 비판, 상대방의 인권문제에 대한 실상보도 등을 비방증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비방증상을 중지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헛점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쪽에서 뭐인가 하면 비방증상 규제대상을 「국가기관, 공공단체」에 국한시키니까 실천에서 이런 예외적인 대상을 수많이 만들어 내야될텐데, 이걸 이걸 누구 통제하며 누구 조종하는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데 영향을 줘서 과연 그것이 어느 한면에서만 이게 진행되고 한면이 실천이 될 수 있는가. 이걸 결국 죽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번째로 말씀드리려는거는 상대측의 안을 신중히 연구·검토하고 이 대방의 안에 이렇게 가능한 것 접근시키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게 우리 쌍방의 합의를 이루는데 주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걸 대화에서 초보적인 예의고, 합의점을 찾는 주요한 방도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것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위원장이 그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비로소 이렇게 합의서 안을, 우리 수정안 나왔고 그 쪽에서도 수정해 가지고 나오셨고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것 만큼,

우리는 그쪽 것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

그쪽에서도 우리걸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될수록이면 이 구조나 이런 내용에서 접근시켜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남(이동복) : 지금 백위원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논평을 안 하겠는데요. 두가지만 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되겠네요.

그 영어표기를 그렇게 하자는 거는 우리가 통일지향적이기 때문에 하자는거예요. 국제기구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떨어져 앉아요. 그런데 이 「KOREA」를 앞에다 세우고 약자를 뒤에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옆자리에 앉게 돼서 같이 모든 것을 서로 상의하면서 하게 되니까, 이거는 지극히 통일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거지 이게 분열지향적으로 한게 아니예요. 그렇게 안하면 정말 분열지향적으로 멀리 떨어져 앉게 된다고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니예요. 거기다 그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또 하나 이거는 핵심의 문제인데, 지금 북쪽에서 나와있는 부속합의서 하고 우리측이 내놓은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매우 중요한 잣대를 써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북측의 안은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에 아주 부합되게 만들어졌는데 남쪽 것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은 우리가 해석하는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에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또 지극히 통일지향적이고 그건

우리가 앞으로 토의과정에서 좀 얘기를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우리 안이, 불행하게도 지금 통일 3원칙에 대해서 남북이 좀 해석을 달리하는 점이 있어요. 그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해석에 입각해서 가장 충실하게 통일 3원칙을 우리측 부속합의서에다 반영시키고 있다, 거기에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유감스러운 점은 귀측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는게 유감스럽다 그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일방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의 객관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끌어 올려서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좀 여러가지로 토의합시다.

북(백남준) : 뭐 말이라는 게 모자라는 법은 없어요.(웃음)

아니, 뭔가 하면 그 영어표기 같은 것도 그래요.

남(이동복) : 아니, 그건 다른 뜻이 없어요.

북(백남준) : 부속합의서에 써넣을 게 있소? 있다면 위원장하고 나중에 알아서, 이게 전번에 임동원대표가 나보고 그러더만, 이 북남합의서를 했는데 자기네 영어로 번역한거 하고 우리 영어로 번역한게 아무래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남(이동복) : 그게 지금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북(백남준) :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시키자, 그래 그건 마주 앉아서 통일시키면 되는거고.

남(이동복) : 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백남준) : 그런데 이 부속합의서에 딱 이렇게 박아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 다음에 그 3대 원칙에 그쪽이 충실하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남(이동복) : 그것만 차이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말이에요. 북에서 지금 유엔에다가 비망록을 보낸걸 보니까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 굉장히 일방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상의를 해야돼. 그 기본합의서의 뜻을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정치분과위원회에서 상의하든지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북(최성익) : 그건 정확히 번역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마도 이선생이...

남(이동복) : 내가 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한번 읽어 드릴게, 얼마나.

남(강근택) : 합의서 번역한게 아니고.

북(백남준) : 그만하고.

남(이동복) : 비망록, 비망록.

북(백남준) : 5차회의는 그러면 언제 하자요?

남(이동복) : 어떡해요, 한달에 두번씩 하면 어때요?

북(백남준) : 한달에 두번?

남(이동복) : 조금 급하게 하지 뭐.

북(백남준) : 좀 급해, 좀 급한데. 6월 초순에 하자요.

남(이동복) : 6월 초순?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6월 초순, 좋아요. 6월 초순.

북(백남준) : 내 생각은 6월 9일날 하자요. 화요일인데.

남(이동복) : 6월 9일? 화요일.

북(백남준) : 9일, 그러면 일요일날 내가 좀 쉬고 월요일날 내려와서 화요일날 또 이위원장하고 마주 앉아....

남(이동복) : 우리 6월 7일날 운동한번 하고 나와도 되잖아.

북(백남준) : 그러게.

남(이동복) : 그래, 6월 9일.

북(백남준) : 9일날 화요일.

북(최성익) : 20일만입니다.

북(백남준) : 스무날만입니다.

남(김달술) : 그러면 6월 말경에 한번 더 해야 되겠네.

북(백남준) : 6월 말에?

남(김달술) : 그러니까 6월 9일날 하면.

남(이동복) : 아니, 그건 그때 가서 정하면.

남(이동복) : 6월 9일날 어떠세요?

북(최성익) : 6월 9일날 다 타결하자는데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쪽에는 결심이 중요한데 결심이 약하구만.

남(이동복) : 자, 그러면 6월 9일로 합시다.

북(최성익) : 한꺼번에 해치울 생각해야지.

남(이동복) : 이견이 없습니다.

북(백남준) : 오늘 수고 많았소.

남(이동복) : 수고 많았어요.

남(김달술) : 우리측안 받아주면 한꺼번에 해결되지.

북(백남준) : 위원장 내 오늘 좀 업어주고 싶은데.

남(이동복) : 왜요?

북(백남준) : 우선 형식만이라도 맞춰가지고 나왔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남(이동복) : 면목이 흰해요.

〈쌍방위원 인사교환후 퇴장〉

